

   			
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	보도자료 www.customs.go.kr 대변인실 042-481-7616~7		
OPEN OPEN PROGRAM			
보도일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배포일자	2019. 4. 16.(화)	담당부서	원산지지원담당관실
담당과장	이철재 (042-481-3210)	담당자	정영진 사무관 (042-481-3213)

우리 기업 인도네시아 수출 숨통 트여

- 한-아세안 FTA 이행위에서 직접운송서류 합의 따른 가시적 성과 -

- 관세청이 한-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의 **직접운송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 합의한 이후**,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수출물품의 직접운송 원칙 위반을 의심한 **FTA 수출검증을 요청한 횟수가 크게 줄었다고** 밝혔다.
 - * 직접운송 검증요청 횟수: '18년 1/4분기(184건) → '19년 1/4분기(7건)
- 지난 2월 합의이전에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이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경우 협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**선적지.도착지.경유지가 표시된 ‘통과선하증권’**을 제출하거나, 직접운송의 보충서류로써 다른 가공행위가 없었다는 선사(항공사)가 사전에 발행하고 서명한 **‘비가공증명서’***를 제출해야 했다.
 - * (비가공증명서) 해당물품이 제3국에서 가공되지 않고 직접운송됨을 증명하는 서류
- 이 합의로 직접운송의 증빙서류가 **‘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입증되는 모든 서류’**로 폭넓게 인정된 덕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.

- 특히, 인도네시아로는 **직항노선이 드물어** 대부분 주변국을 경유하여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, 합의 이전까지 **직접운송 증빙서류 제출 등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청** 탓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.
- 관세청은 앞으로도 **양자.다자 간 협력을** 통해 우리 수출 기업이 **FTA 특혜를**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
※ 한-아세안 FTA 협정문(직접운송관련 규정)

1. (직접운송 정의) 해당물품이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되며,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혜관세대우의 요건을 충족한다.
 - ①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 또는 운송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 될 것, ②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, ③ 하역,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
2. (직접운송 증빙서류) ① 통과선하증권, ② 원산지증명서, ③ 상업송장 사본, ④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